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8 선고 2019가단513990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 고 1. A

2. 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0. 1. 31.

판결 선고 2020. 2. 2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97,136,680원 및 그중 196,086,136원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사이의 2018. 10.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A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8. 10. 29. 접수 제456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7. 11. 21.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30,000,000원,보증기한 2025. 11.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보증금액 7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서대로 '1,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이후 2차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9. 11. 20.까지로 변경하였다.

2) 피고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7. 12. 11. 대출금 129,300,000원을 변제기2025. 11. 2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1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7.11. 21. 대출금 7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2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2차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9. 3. 16.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19. 5. 21.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합계 196,086,1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손해금, 권리보전비용 등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5.6. 1.경 이후부터 연 10%이다. 원고는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대지급금으로 1,346,104원을 지출하였다가 이후 295,560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이 1,050,544원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피고 A는 2018. 10.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13,2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97,136,680원(= 196,086,136원 +1,050,544원) 및 그중 대위변제원금 196,086,13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5.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이자납입을 연체하여 2019. 3.16.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9. 5. 21.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원고가 2017. 11. 2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8. 10. 29.경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약 5개월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후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1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을 뿐인 사실, 피고 A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원금 66,500,000원, 129,300,000원 합계 195,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A가 C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2.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조합,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와 같이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피고 A의 기존채권자였던 것은 아니나,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18. 10. 26. 피고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신용정보사를 통하여 '대출금액 10,000,000원, 이율17.9%, 연체이자율 20.9%, 대출기간 60개월'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가 대출 관련 서류에 기초하여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의 한도와 신용도를 심사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8. 10. 29. 피고 A의 대출금 1,000,000원 증액 요청을 수용하여 대출금액을 1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인지세30,000원을 공제한 10,9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대출금의 120%),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가 피고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 담보로써 체결된 것으로서 일반채권자를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성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성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1층 21.6㎡

2층 267.18㎡

3층 267.18㎡

4층 267.18㎡

5층 267.1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9.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성시

대 52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524분의 32.85

